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9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용우 · 오세희 · 민병덕
김남희 · 김남근 · 한준호
이주희 · 이강일 · 박찬대
박지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 · 경제 · 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나 정무직 임용

을 제한하여 수사의 순수성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수청 설치 및 지역조직 근거 마련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필요 시 지역중수청을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나. 중대범죄·관련범죄 범위를 법률로 정의

중대범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 및 수사·공소 업무 중사 공무원 범죄(대통령령 위임)로 규정하고, 공범관계 범죄·동일목적 동시/수단결과 범죄·증거인멸·위증 등 특정 범죄를 ‘관련범죄’로 정의하여 ‘중대범죄등’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제1호~제3호).

다. 권한남용 금지 및 공정·중립 의무 명문화

중수청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중수청장 설치, 권한 및 국회 통제 장치

중수청장을 두어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며, 국회 요구 시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증언감

정법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제1항~제4항).

마. 중수청장 임명 절차 · 임기 · 정년 및 탄핵 규정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행안부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1인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 2년(중임 불가) · 정년 65세, 위헌 · 위법 시 탄핵소추 가능, 보수 · 대우는 차관급으로 정함(안 제5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 및 궐위 시 후임 임명

수사 고위공무원 · 고위경찰(총경 이상) 경력, 법조경력(판사 · 검사 · 변호사), 수사사무 종사 경력, 관련 학문 조교수 이상 경력 중 15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 대상으로 하고(경력 합산),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임명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및 국회 추천절차

행안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7인 구성(행안부 차관, 경찰청장, 해경청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외 교섭 · 비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하며, 국회의장이 10일 내 추천 요청 및 미추천 시 갈음 위촉,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찬성), 2인 후보 추천 및 추천 존중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아. 차장 및 직제(조직체계) 규정

차장을 두어 중수청장을 보좌 · 대리하게 하고,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중수청장 제청→행안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하며, 중수청 직제는 국 · 부 또는 과로 하고 세부 명칭 · 분장사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 지역중수청 운영 근거 마련

지역중수청장 설치 및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지역중수청 직제·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차. 수사관 제도 도입(자격·임용·관할·지휘 및 이의제기)

중수청에 수사관을 두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게 하고 협력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2조, 안 제13조), 자격요건(변호사, 7급 이상 조사·수사 경력 등)과 계급체계(수사1~9급 등), 임용권한(대통령/중수청장), 직무관할 및 관할외 활동 허가를 규정하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상급자 지휘·감독 및 수사인권보호관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불이익 금지를 둠(안 제18조,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카. 수사관 인사·복무: 결격·정원·당연퇴직·정년·정치관여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준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결격, 탄핵 파면 후 5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등), 특정직공무원 의제 및 정원(대통령령), 당연퇴직 사유, 정년 60세(중수청장 제외), 정당가입·정치활동 금지 및 영리업무·무단 유상직무 금지를 규정하고, 임용·승진·복무 등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4조).

타. 불송치 통제·인권보호 및 대외관계·벌칙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허용하고(30일), 심의위가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며, 기각 시 지역공소청 재이의 및 사건 송치·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수사인권보호관(개방형 직위 운영 가능)의 독립성, 수사방식 변경·수사관 교체 권고, 수사관 이의신청 조사·의견제출 및 미수용 시 서면사유 제시를 규정함(안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울러 파견·겸임 금지,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및 사건 수임 제한, 수사경합 시 이첩요청, 다른 수사기관·공소청과 협력 및 사건 이첩, 불송치 시 인지사건 이첩, 수사관 범죄 통보를 규정하고(안 제29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 벌칙과 미수 처벌을 둠(안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범죄, 외환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범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나. 제1호의 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다. 중대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② 중수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역중수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수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수청장은 제7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그 중 1명

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④ 중수청장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중수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에서의 답변과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중수청장의 보수 및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⑥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⑦ 중수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⑧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수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중수청장이 껴워된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중수청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중수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차관
2. 경찰청장
3. 해양경찰청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⑪ 추천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⑫ 추천위원회의 구성 중 국회추천 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중수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수청장을 보좌하며, 중수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차장의 궐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직제) ① 중수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한다.

② 중수청 직제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지역중수청장) ① 지역중수청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지역중수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직제)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사관

제12조(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수청에 수사관을 둔다.

제13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을 수사한다.

② 수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관의 자격)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와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제15조(수사관의 임용) ① 수사관의 계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9급까지로 한다.

②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수사6급 이하 수사관은 중수청장이 임용한다.

제16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수사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수청(소속 지역중수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중수청장(소속 지역중수청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

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 수사관은 직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제19조(수사관의 이의제기권) ① 수사관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원) ①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당연퇴직) ① 수사관이 「경찰공무원법」 제27조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② 수사관이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정년) 수사관(중수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중수청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8.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사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24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관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중수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관”으로 본다.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제25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① 중수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수청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불송치심의위원회 및 수사인권보호관

제26조(이의신청) ①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중수청 불송치심의위원회(이하 “불송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불송치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불송치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송치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지역공소청에 이의가 신청되는 경우 수사관은 지체없이 지역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불송치심의위원회) ①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불송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불송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한다.

③ 불송치심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불송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중수청의 장에게 인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중수청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수사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수사인권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

하여야 한다.

⑥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수사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30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중수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공소청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중수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중수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1조(수사의 경합)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

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첩요청을 받은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수청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수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인지 사건의 이첩) 중수청장은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중수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수청의 조직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37조(정치 관여죄)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직권남용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5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②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임용은 부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7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